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7. 5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. 7. 6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5. 7. 20.(제129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 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복지지원과장 정석한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(2005. 7. 31부)됨에 따라 장학생의 선발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함

#### 나. 주요골자

- 장학생의 선발 :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에서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”로 변경 (안 제6조제2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가 2005. 7. 31부로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생 관리에 관한 심의기능이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변경조정하고
- 위원회 변경에 따른 기능폐지와 관련 조문 등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- 특히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」 부칙에 사하구 복지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됨

4. 질 의 및 답 변 요 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